

『구미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춘구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인입 기피
-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 차등이 발생하여 행정 불신 및 주민 위화감 조성
- 따라서 급수공사 신청 시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정액공사비 적용으로 비용 부담경감 및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수도물을 사용토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수도 미 인입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 공사비 부담 가중으로 상수도 인입을 기피하고 있어 급수공사비 대지경계 까지 200m이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12조)
- 구경 15mm이하 급수 신청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액 급수공사비 실시 규정 신설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 제38조

나. 예산조치 : 상수도 미 인입지역의 급수공사비를 대지경계까지
200m 이내는 예산 범위 내 일반회계에서 지원

5. 검토의견

- 상수도 미인입 주민들은 영세민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수공사비 가중으로 인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
-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수용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신설급수 공사비를 배수원관 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,
- 현재 실액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함으로써 각 수용가마다 공사비 차등발생으로 인한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토록 하였으며
-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으로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코자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될 시 일반회계에서의 부담을 특별회계에서 부담으로 개정이 필요함.